

제17차 상임전국위원회 안건

2024. 6. 19.(수)



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

I. 의결주문

-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II. 의결(안)

- 당헌 개정안 주요내용

| 조 항 | 주요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26조(당 대표의 선출) | ○ 당 대표 선출시, 당원선거인단 투표 80%, 여론조사 20% 결과 반영 |
| 제27조(선출직 최고위원) | ○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시, 당원선거인단 투표 80%, 여론조사 20% 결과 반영 |
| 제27조의2(청년최고위원) | ○ 청년최고위원 선출시, 당원선거인단 투표 80%, 여론조사 20% 결과 반영 |
| 제27조의4(동일득표자 처리 특례) | ○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|
| 부칙 | ○ 효력발생 시기 명문화 |

※ 별첨자료 참조

III. 관련근거

- 당헌 제23조 및 제90조

[당헌 제23조(기능)]

① 상임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1. 강령·기본정책·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

[당헌 제90조(개정의 발의)]

당헌의 개정 발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<당헌>

| 구 분 | 현 행 | 개정(안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당 대표 선출시, 여론조사 결과 반영 | <p>제 26 조 (당 대표의 선출)</p> <p>① 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 다만, 최다득표한 자의 득표율이 50%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.</p> | <p>제 26 조 (당 대표의 선출)</p> <p>① 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유효투표결과를 80%, 여론조사 결과를 20% 반영한 결과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 다만, 최다득표한 자의 합산 득표율이 50%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.</p> |
|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시, 여론조사 결과 반영 | <p>제 27 조 (선출직 최고위원)</p> <p>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1위 내지 4위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 다만,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.</p> | <p>제 27 조 (선출직 최고위원)</p> <p>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유효투표결과를 80%, 여론조사 결과를 20% 반영한 결과에서 1위 내지 4위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 다만,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.</p> |
| 청년최고위 원 선출시, 여론조사 결과 반영 | <p>제 27 조의 2 (청년최고위원)</p> <p>①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 다만,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청년최고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.</p> | <p>제 27 조의 2 (청년최고위원)</p> <p>①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유효투표결과를 80%, 여론조사 결과를 20% 반영한 결과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 다만,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청년최고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.</p> |

| 구 분 | 현 행 | 개정(안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<p>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</p> | <p>제 27 조의 4 (동일득표자 처리 특례)</p> <p>①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 <u>에서</u>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</p> <p>②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 <u>에서</u> 동일득표자의 순위를 정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</p> <p>③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<u>에서</u>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</p> | <p>제 27 조의 4 (동일득표자 처리 특례)</p> <p>①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 <u>와 여론조사를 반영한 결과에서</u>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</p> <p>②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 <u>와 여론조사를 반영한 결과에서</u> 동일득표자의 순위를 정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</p> <p>③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<u>와 여론조사를 반영한 결과에서</u>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</p> |
| <p>효력발생 시기 명문화</p> | <p><u>부칙<신설></u></p> | <p><u>부칙(2024. 6. 19.)</u> 이 당헌은 2024년 6월 19일 개최한 제 13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/p> |

당규 개정(안)

I. 의결주문

- 당규 개정(안)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II. 의결(안)

- 당규 <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> 개정안 주요내용

| 조 항 | 주요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43조(당 대표 당선인 결정) | ○ 당 대표 선출시, 당원선거인단 투표 80%, 여론조사 20% 결과 반영 |
| 제43조의1(선출직 최고위원 당선인 결정) | ○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시, 당원선거인단 투표 80%, 여론조사 20% 결과 반영 |
| 제43조의2(청년최고위원 당선인 결정) | ○ 청년최고위원 선출시, 당원선거인단 투표 80%, 여론조사 20% 결과 반영 |
| 제43조의3(동일득표자 처리 특례) | ○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|
| 부칙 | ○ 효력발생 시기 명문화 |

※ 별첨자료 참조

III. 관련근거

- 당헌 제23조 및 제90조

[당헌 제23조(기능)]

- ① 상임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 2. 당규의 제·개정 또는 폐지

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<당규 :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>

| 구 분 | 현 행 | 개정(안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당 대표 선출시, 여론조사 결과 반영 | 제 43 조 (당 대표 당선인 결정) ① 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 다만, 최다득표한 자의 득표율이 50%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, 구체적 방식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. | 제 43 조 (당 대표 당선인 결정) ① 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<u>유효투표결과를 80%, 여론조사 결과를 20% 반영한 결과에서</u>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 다만, 최다득표한 자의 <u>합산 득표율</u> 이 50%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, 구체적 방식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. |
|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시, 여론조사 결과 반영 | 제 43 조의 1 (선출직 최고위원 당선인 결정)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1위 내지 4위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 | 제 43 조의 1 (선출직 최고위원 당선인 결정)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<u>유효투표결과를 80%, 여론조사 결과를 20% 반영한 결과에서</u> 1위 내지 4위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 |
| 청년최고위원 선출시, 여론조사 결과 반영 | 제 43 조의 2 (청년최고위원 당선인 결정) ①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 | 제 43 조의 2 (청년최고위원 당선인 결정) ①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<u>유효투표결과를 80%, 여론조사 결과를 20% 반영한 결과에서</u>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. |

| 구 분 | 현 행 | 개정(안) |
|---|---|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</p> | <p>제 43 조의 3 (동일득표자 처리 특례)</p> <p>①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</p> <p>②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에서 동일득표자의 순위를 정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</p> <p>③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</p> | <p>제 43 조의 3 (동일득표자 처리 특례)</p> <p>①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와 여론조사를 반영한 결과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</p> <p>②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와 여론조사를 반영한 결과에서 동일득표자의 순위를 정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</p> <p>③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조사를 반영한 결과에서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</p>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효력발생 시기 명문화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<신설></u>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(2024. 6. 19.)</u></p> <p><u>이 규정은 2024년 6월 19일 개최한 제17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/u></p> |

